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서

개인 사업자

- 수기 판매를 위한 특약서 2부
- KEY-IN 거래 허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표자 개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 수기 판매를 위한 특약서 2부
- KEY-IN 거래 허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는 수기판매 서비스를 함께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가맹점"이 "카드사"의 회원(해외발급 회원 포함)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총칭하여 "카드"라 한다.) 거래 시 수기판매 서비스 처리에 관한 제반 절차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수기판매라 함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를 카드로 하고자 할 경우, 비대면·비접촉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행위를 말하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매출전표 양식(무서명)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수기거래에 의해 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분에 한한다.

제4조 (판매대상)

이 특약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대상 회원은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카드 회원으로 한정하며, 판매대상 상품은 "가맹점"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으로 한다.

제5조 (신용판매 한도액)

① 이 특약에 의한 신용판매 한도액은 "카드사"가 따로 정하며 할부 가능 개월 수는 "카드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② 이 특약 기간 중의 신용판매 한도액과 할부 가능 개월 수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그 내용을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거래승인)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카드사"의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여 "카드사"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이를 제시하고 "카드사"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승인은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 중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호 합의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드사"가 개발한 전자인증술서를 통해 거래승인을 득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인증술서를 통해 거래승인을 득한 경우
3. 기타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한 방법에 의한 경우

제7조 (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가맹점"은 판매 및 거래승인이 완료된 내역을 "카드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카드사"에게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② "가맹점"의 해외카드 수기거래에 의한 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별도의 "카드사"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해외카드 거래가 가능하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한 총 거래내역 중 정상 매출분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이 지정한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부도반환)

이 특약에 의한 카드 매출 후 "가맹점"의 고의, 과실로 "가맹점"의 직원에 의한 허위 불법 거래 포함 "카드사"의 회원의 민원(철거권, 항변권 등)이나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 불만족에 따른 반환, 금액의 상이 등) 또는 주문판매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자 및 이용자 관리 자료의 보관 및 제출)

"가맹점"은 "카드사"의 합의를 득한 후 매출전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거래에 따른 주문접수 자료 및 이용자 관리 자료(매출증빙 서류 및 물품 배달증상)를 매출일 익월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카드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① "가맹점"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카드 거래 시 카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전송한 신용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이를 비정상적인 카드 거래로 간주하고 동 매출에 대하여 매출 취소 또는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 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물품이나 용역이 최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 판매대금을 "카드사"에게 청구한 경우
3. 물품이 최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카드 판매대금을 "카드사"에게 청구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각종 소비자 민원으로 인해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가맹점"이 취급하는 해외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가. 카드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 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이 판매대상 물품을 카드회원에 배송하지 않거나 제품 대상 서비스를 카드회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점이 카드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한국 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종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6.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변조된 카드(국내, 해외)거래에 의해서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7조 및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③ 회원과 "가맹점" 간에 신용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이를 "카드사" 또는 회원이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이 제3항에 규정한 "가맹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공제하거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카드사"는 제3항에 의한 "가맹점"의 분쟁 해결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이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해 "카드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카드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자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보충)

① 이 특약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소정의 특약 보충금을 "카드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약 보충 종류는 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한다. (다만, 현금담보 및 지급보류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다)
③ 특약 보충금 설정
1. 특약 보충 종류:
2. 특약 보충 금액:
3. 제1호의 특약 보충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충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 그 공제된 금액(즉, 지급보류된 금액) 자체를 특약보충금으로 한다.
4. 제1호의 특약 보충 종류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 시 "카드사"는 매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충금은 "가맹점"의 매출액 변동 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충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 가맹점 앞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특약 보충금을 반환할 수 있다. (해외카드 매입액의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특약 보충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가)압류에 의한 압류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

제12조 (통지 의무)

① "가맹점"은 사업자번호나 업종의 변경, 상호 변경,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카드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가맹점"은 이 특약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카드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카드사"의 모든 불이익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13조 (정보유출의 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특약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 정보 및 거래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손해배상)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약의 유효기간)

이 특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중 어느 한쪽이 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약기간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약기간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6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 특약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서면 통보로서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특약의 준수 사항 내지 의무 이행을 현저히 타만하거나 지연하여 "카드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카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해지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월승인 한도의 하향 조정,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 가맹점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특약 보충금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특약의 해석)

이 특약은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 관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8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 관할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센터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카드사"와 "가맹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카드사]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66 /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20 년 월 일

[가맹점] 주소: / 상호:

대표이사	(인)
------	-----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는 수기판매 서비스를 함께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가맹점”이 “카드사”의 회원(해오발급 회원 포함)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총칭하여 “카드”라 한다), 거래 시 수기판매 서비스 처리에 관한 제반 절차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수기판매”란 “카드사”의 회원이 “가맹점”의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를 카드로 하고자 할 경우, 비대면·비접촉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행위를 말하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매출전표 양식(무서명)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수기거래에 의해 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신용판매 매출분에 한한다.

제4조 (판매대상)

이 특약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대상 회원은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발행한 카드 회원으로 한정하며, 판매대상 상품은 “가맹점”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으로 한다.

제5조 (신용판매 한도액)

- ① 이 특약에 의한 신용판매 한도액은 “카드사”가 따로 정하여 할부 가능 개월 수는 “카드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② 이 특약 기간 중의 신용판매 한도액과 할부 가능 개월 수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그 내용을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거래승인)

-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카드사”의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여 “카드사”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이를 제시하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승인은 카드의 유효성 및 결제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 중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호 합의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드사”가 개발한 전자인증술서를 통해 거래승인을 득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인증술서를 통해 거래승인을 득한 경우
 3. 기타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한 방법에 의한 경우

제7조 (대금 청구 및 지급)

- ① “가맹점”은 판매 및 거래승인이 완료된 내역을 “카드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카드사”에게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 ② “가맹점”의 해외카드 수기거래에 의한 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별도의 “카드사”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해외카드 거래가 가능하다.
- ③ “카드사”는 “가맹점” 으로부터 접수한 총 카드 거래내역 중 정상 매출분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이 지정한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부도반환)

이 특약에 의한 카드 매출 후 “가맹점”의 고의, 과실로 “가맹점”의 직원에 의한 허위 불법 거래 포함) “카드사”의 회원의 민원(철하권, 항변권 등)이나 이의제기(주문사실 부인, 물품 불납족에 따른 반환, 금액의 상이 등) 또는 주문판매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자 및 이용자 관리 자료의 보관 및 제출)

“가맹점”은 “카드사”의 합의를 득한 후 매출전표 작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거래에 따른 주문접수자료 및 이용자 관리자료(매출증빙 서류 및 물품 배달상장)를 매출일 익월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카드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 ① “가맹점”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카드 거래 시 카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전송한 신용 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이를 비정상적인 카드 거래로 간주하고 동 매출에 대하여 매출 취소 또는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카드 소비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물품이나 용역이 최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 판매대금을 “카드사”에게 청구한 경우
 3. 물품이 최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카드 판매대금을 “카드사”에게 청구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각종 소비자 민원으로 인해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가맹점”이 취급하는 해외카드 거래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 가. 카드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 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 나. 가맹점이 판매대상 물품을 카드회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대상 서비스를 카드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다. 가맹점이 카드 회원의 취소 요청 등에 대해 환급 의사를 표명하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가맹점이 거래금액을 이점으로 청구하거나 거래금액을 상이하게 청구한 경우
 6.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변조된 카드(국내, 해외)거래에 의해서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7조 및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 ③ 회원과 “가맹점” 간에 신용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이를 “카드사” 또는 회원이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이 제3항에 규정한 “가맹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차 회 지급할 대금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공제하거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카드사”는 제2항에 의한 “가맹점”의 분쟁 해결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해 “카드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카드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보증)

- ① 이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소정의 특약 보증금을 “카드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특약 보증 종류는 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한다. (다만, 현금담보 및 지급보류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다)
- ③ 특약 보증금 설정
 1. 특약 보증 종류;
 2. 특약 보증 금액;
 3.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가맹점 매출채권(지급보류)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 중 제2호의 특약 보증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공제하여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며, 그 공제된 금액(즉, 지급보류된 금액) 자체를 특약보증금으로 한다.
 4. 제1호의 특약 보증 종류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한 경우 만기일 도래 시 “카드사”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4.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은 “가맹점”의 매출액 변동 사항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서 정한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특약이 해지되고, 가맹점 알 미도래 할부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특약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해외카드 매입내역은 미도래 할부잔액으로 간주하며 해외카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특약 보증금의 반환은 최종 매입건의 건 별 매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도반환 또는 회원 이의제기 등의 가맹점 미정리 대금 및 채권(가)압류에 의한 압류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한다.

제12조 (통지 의무)

- ① “가맹점”은 사업번호나 업종의 변경, 상호 변경,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카드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이 특약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카드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카드사”의 모든 불이익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13조 (정보유출의 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특약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은 “카드사”의 회원 정보 및 거래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손해배상)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약의 유효기간)

이 특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중 어느 한쪽이 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약기간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약기간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6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 특약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서면 통보로써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특약의 준수 사항 내지 의무 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카드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주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그 신용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카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의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특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카드사”는 제2항의 경우에 특약해지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월승인 한도의 하향 조정, 대금지급 주기의 연장, 가맹점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특약 보증금의 상향 조정, 일정기간 이상의 대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특약의 해석)

이 특약은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 관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8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특약과 관련된 소송 관할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센터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카드사”와 “가맹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가맹점주 자필작성내용: 계약담당자 ()로부터 아래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 설명을 듣고 이해 () 하였습니다. 비정상거래 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회원의 사용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거래증표(매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못한 경우, 물품미배송·서비스미제공, 약속된 환급 미이행, 잘못된 거래금액 청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상 본인확인 미비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추가됨)

[카드사]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66 / 상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가맹점] 주소: / 상호: 대표이사 (인)